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 정 2017.09.10.

전면개정 2025.04.01.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적용범위) 투자자로 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 “관련 법규”라고 한다)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수수료의 종류)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가. 운용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나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 부터 받는 금전
- 다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로 부터 받는 금전
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 부터 받는 금전
- 마. 성과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금전
- 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: 집합투자기구 평가 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 부터 받는 금전

2. 수수료

- 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

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
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.

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: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,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(수수료 부과 기준) ①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회사는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1.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2.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3. 동일한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복수의 자집합투자기구 등 실질이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간에는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

③회사는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는 법 제7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

2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
3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,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

제5조(집합투자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) ①신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②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, 그 부과 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④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⑤회사는 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

제6조(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) ①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

는 한,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

제7조(성과수수료의 수령기준) 법 제9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과 관련된 투자결과 및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1.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

2.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가.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(이하 이조에서 “기준지표등”이라 한다)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

나. 운용성과(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 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

다.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 가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
라.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,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 할 것

제8조(설명의무)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9조(투자광고)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수료의 인상) ①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인상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②회사는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방과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한다.

제11조(공시 및 통보)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

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5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.